

##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04. 23.

다 산 동 장



### 1. 대 상 자

| 대 상 자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세대주<br>성명 | 발급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고사유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성 명   | 생년월일       | 주 소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김**   | 2003.03.02 | 중구 동호로18길 28    | 김**       | 2020.04.01.~<br>2021.03.31. | 등기우편 반송 |
| 김*    | 2003.03.10 | 중구 청구로91-25     | 김**       | 2020.04.01.~<br>2021.03.31. | 등기우편 반송 |
| 김**   | 2003.03.19 | 중구 동호로11마길 31   | 김**       | 2020.04.01.~<br>2021.03.31. | 등기우편 반송 |
| 조**   | 2003.03.30 | 중구 동호로11마길 20-7 | 조**       | 2020.04.01.~<br>2021.03.31. | 등기우편 반송 |

### 2. 신청장소 : 다산동주민센터

### 3. 발급안내

- 1)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(사진포함)
 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, 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2)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.(3.5cm×4.5cm)
  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기간 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 담당자 : 서채원 (☎ 02-3396-6747)